

Research Paper

건설업계 관점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An Analysis on the Problem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from the Construction Industry's Perspective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이대형¹ · 이준용¹ · 손창백^{2*}

Lee, Dae-Hyeong¹ · Lee, Jun-Yong¹ · Son, Chang-Baek^{2*}

¹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Construction Engineering, Semyung University, Jecheon-si, Chungcheongbuk-do, 27136, Korea

²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myung University, Jecheon-si, Chungcheongbuk-do, 27136, Korea

*Corresponding author

Son, Chang-Baek
Tel : 82-43-649-1328
E-mail : cbson@semyung.ac.kr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wareness, necessity, and challenge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ith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hich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research aimed to propose future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findings, safety officials consider securing more young and competent domestic skilled workers, as well as improving safety management standards and workers' safety awareness, to be the most crucial factors in preventing and reducing safety accidents. Furthermore, the primary improvement plan fo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involves clarifying ambiguous provisions in the current law. Government policy suppor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nd revisions should focus on preventive measures that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afe working environment.

Keywords : safety accidents,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improvement measures

Received : December 22, 2022

Revised : January 25, 2023

Accepted : February 2, 2023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국내 건설업은 1960년대 경제발전과 함께 건설수요가 급증하면서 고도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과 함께 건설수요가 증가하면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이어 최근에는 2021년 ‘광주 학산빌딩 붕괴 사고’,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의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많은 건설회사들은 기업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여 왔고,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이익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1]. 이로 인해 건설공사 수행시 부실시공과 함께 건설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의 안전관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발주자 및 설계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for-Safety)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4]. 그러나, 최근 또다시 건설안전사고가 사회적 관심과 함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강한 규제정책으로 ‘중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중대재해처벌법'을 수립하여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회, 정부 산하의 관계 부처 및 산업계가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 발의된 법이 아니므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내용에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여 많은 혼선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 대형, 중견, 소규모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현재 건설업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회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건설회사는 회사규모별로 대형, 중견, 소규모로 구분하고, 각 규모별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직접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형, 중견, 소규모 건설회사는 2021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공능력순위 1-100위에 속한 1그룹, 101-300위에 속한 2그룹, 301위 이하를 3그룹 건설회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면서 건설회사에서 직접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실무자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건설회사의 본사 안전전담부서원 또는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개요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urvey Summary

Classification	Contents
Target	Construction company site safety manager and head office person responsible for safety - 1group(1~100th) 32 construction companies, 81 copies - 2group(101~300th) 35 construction companies, 81 copies - 3group(301th~) 117 construction companies, 229 copies
Period	- 2022. 07. 01 ~ 2022. 09. 30(3month)
Method	- Online article analysis by discipline - Question investigation through E-mail and Fax
Contents	- Cause of construction company's safety accident - Recognition whether and necessity of the construction company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 Expected effects and problems of the construction company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 Improvements to the construction companies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1.3 선행연구 고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선행연구는 아직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이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 Kang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와 법인 스스로가 기업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과 대표자에게 직접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5]. Kim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시 법인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소가 면제되는 일정 면책조항을 두어야 하며, 사망사건뿐만 아니라 중대한 부상이나 중상해도 형사책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고, 원청이 업무의 일부를 하청한 경우 원청에게도 안전 의무를 공동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 Kim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위헌 문제, 다른 산업안전관련 법령과의 관계, 기타 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법령의 미비 등 입법적인 한계점을 제시하였다[7]. 상기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 법 제정시 포함해야 할 필요 규정, 그리고, 법 규정상의 법적 문제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

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회사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회사에서 직접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실무자의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2. 중대재해처벌법

2.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보호하는 대상¹⁾과 의무의 주체²⁾ 및 재해의 정의와 처벌수준이 다르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에 대해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준수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만 처벌을 하는 것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차이가 있다[8].

이 법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오면서 2020년 9월 입법에 논의됐다. 그리고 2021년 1월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면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1,9].

2.2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0].

2.3 중대재해처벌법 조항³⁾

본 절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주요 항목만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거나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로 부터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한다.

제6조 및 제7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제6조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해서 또한 벌금형을 부과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은 노무 제공자로 근로자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배달종사자, 현장 실습생 등이 해당됨.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근로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 제공자 등의 모든 종사자가 해당됨.
-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대상이자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보호 주체로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등을 규정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기관의 경영책임자로서, 각 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를 규정함.
-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실직적 지배,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설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한다.

제10조 및 제11조는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 1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벌금형을 처한다.

제15조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경우,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6조는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반기별로 그 상황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8].

3.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분석

본 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건설회사 안전관련 업무담당자들의 건설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건설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3.1 안전사고 발생원인

안전사고를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형 및 중견 건설회사인 1, 2그룹에서는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현장경력이 짧은 저임금 근로자 고용’ 항목이 32명(19.8%), 29명(1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항목이 25명(15.4%), 22명(13.6%)으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건설회사인 3그룹은 ‘국내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한 안전대응능력 저하’ 항목이 110명(1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안전을 소홀히 생각하는 근로자의 작업관행’ 항목이 94명(15.7%)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Table 2. Causes of Construction Company’s Safety Accidents(Overlap Responses)

Classification	1group	2group	3group	Total
Not safety-conscious worker practices	21 (13.0)	18 (11.1)	94 (15.7)	133 (14.4)
Administrator’s unreasonable instructions due to urgent construction schedule	13 (8.0)	21 (13.0)	79 (13.2)	113 (12.2)
Employment of low-wage workers with short field experience due to difficulties in manpower supply and demand	32 (19.8)	29 (17.8)	81 (13.5)	142 (15.4)
Decrease in safety response capacity due to aging of domestic construction workers	20 (12.3)	21 (13.0)	110 (18.4)	151 (16.4)
Employment of hard-to-communicate foreign workers	25 (15.4)	22 (13.6)	68 (11.4)	115 (12.5)
Lack of basic safety management capabilities of subcontractors	21 (13.0)	10 (6.2)	58 (9.7)	89 (9.7)
Failure of on-site manager’s instructions for workers’s safety	20 (12.3)	21 (13.0)	59 (9.9)	100 (10.8)
Conceitedness about the way workers work	10 (6.2)	20 (12.3)	49 (8.2)	79 (8.6)
Total	162 (100)	162 (100)	598 (100)	922 (100)

보면 안전사고 발생원인으로 제시한 조사항목들이 모두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건설회사 안전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안전사고가 어느 일부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방안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에 대한 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3그룹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젊은 국내 건설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체계 마련’ 항목이 각각 45명(27.8%), 45명(27.8%), 141명(2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킨다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항목이 각각 32명(19.8%), 25명(15.4%), 126명(21.1%)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소통능력 및 안전의식 향상’ 항목과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 항목도 그 다음 순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방안에 대해 안전관련업무 실무자들은 안전사고 발생원인과는 달리 일부 특정 방안으로 의견이 압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젊고 유능한 국내 기능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언어소통이 어렵고 안전의식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향상이 시급히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협력업체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원도급업체와 비교하여 관리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관리수준도 미흡한 협력업체와 그러한 협력업체가 조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련업무 실무자로서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Reduction Measures(Overlap Responses)

Classification	1group	2group	3group	Total
Designed for pre-safety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ntroduction of Design For Safety system)	11 (6.8)	5 (3.1)	29 (4.8)	45 (4.9)
In the event of a safety accident, to the chief executive of a construction company, Strengthening penal provisions and sanctions provisions	3 (1.9)	7 (4.3)	29 (4.8)	39 (4.2)
Strengthening systems to ensure that ordering body are responsible for safety	11 (6.8)	16 (9.9)	29 (4.8)	56 (6.1)
Establishing a smooth supply-demand system for young domestic construction workers	45 (27.8)	45 (27.8)	141 (23.6)	231 (25.1)
Improvement of language communication skills and safety awareness for foreign workers	20 (12.3)	20 (12.3)	81 (13.5)	121 (13.1)
Improvement of subcontractors' safety management capabilities	21 (13)	16 (9.9)	71 (11.9)	108 (11.7)
Reminder of workers' sense of safety that they protect their own safety	32 (19.8)	25 (15.4)	126 (21.1)	183 (19.9)
Compliance with construction speed by appropriate air calculation for construction work	10 (6.2)	15 (9.3)	59 (9.9)	84 (9.1)
Development of new construction methods and new materials for manpower reduction	9 (5.6)	11 (6.8)	33 (5.5)	53 (5.7)
Other opinions	0 (0)	2 (1.2)	0 (0)	2 (0.2)
Total	163 (100)	162 (100)	601 (100)	922 (100)

4.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분석

본 장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 및 문제점 등을 국내 대형, 중견, 소규모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4.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3그룹 모두에서 80% 이상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업계에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건설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안전기술인력을 확충하고, 본사 및 현장의 유기적인 안전 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able 4. Recognition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Classification	1group	2group	3group	Total
Not completely know	0 (0)	0 (0)	0 (0)	0 (0)
Least know	10 (12.3)	8 (9.8)	46 (15.4)	64 (13.9)
Know to some extent	35 (43.3)	36 (44.5)	134 (44.8)	205 (44.5)
Know well	24 (29.6)	27 (33.3)	103 (34.4)	154 (33.4)
Know very well	12 (14.8)	10 (12.4)	16 (5.4)	38 (8.2)
Total	81 (100)	81 (100)	299 (100)	461 (100)

4.2 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필요하다’ 항목이 각각 54명(66.7%), 61명(75.3%), 213명(71.2%)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원들은 안전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3.2절에서 분석한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 방안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시 건설업체 최고경영자에 대한 벌칙규정 및 제재조항 강화’ 항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안전사고를 예방 및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Necessity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Classification	1group	2group	3group	Total
Need	54 (66.7)	61 (75.3)	213 (71.2)	328 (71.1)
Not need	27 (33.3)	20 (24.7)	86 (28.8)	133 (28.9)
Total	81 (100)	81 (100)	299 (100)	461 (100)

4.3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분석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그룹에서는 ‘사전예방 중심이 아닌 사후처벌 중심’ 항목이 20명(2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부과’ 항목이 19명(23.5%)으로 높게 나타났다. 2그룹에서는 ‘모호한 법조항에 대한 해석 어려움’ 항목과 ‘사전예방 중심이 아닌 사후처벌 중심’ 항목이 각각 22명(2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부과’ 항목이 14명(17.2%)으로 높게 나타났다. 3그룹에서는 ‘모호한 법조항에 대한 해석 어려움’ 항목이 87명(2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부과’ 항목이 69명(23.1%)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기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됨을 알 수 있다. 첫째,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법조항으로 인해 안전관리자 및 현장관리자가 규정의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법해석에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법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둘째, 건설업체 최고경영자에게 형사처벌 등 과도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무리한 법적용으로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현행법이 사후 처벌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Table 6. Problems with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Classification	1group	2group	3group	Total
Business contraction due to fear of punishment	12 (14.8)	5 (6.2)	40 (13.4)	57 (12.4)
Construction delays and increased safety costs	7 (8.6)	5 (6.2)	41 (13.7)	53 (11.5)
Imposition of excessive responsibility to management managers	19 (23.5)	14 (17.2)	69 (23.1)	102 (22.1)
Difficulty in interpreting ambiguous legal provisions	16 (19.8)	22 (27.2)	87 (29.1)	125 (27.1)
Procedures for hearing the suspect's opinion is ambiguous	7 (8.6)	13 (16)	18 (6)	38 (8.2)
Focus on post-punishment rather than prevention	20 (24.7)	22 (27.2)	44 (14.7)	86 (18.7)
Total	81 (100)	81 (100)	299 (100)	461 (100)

5.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Tabl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1그룹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 필요’ 항목이 20명(2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처벌 중심이 아닌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 항목이 14명(17.3%)으로 높게 나타났다. 2그룹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항목이 19명(2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 필요’ 항목이 18명(22.2%)으로 높게 나타났다. 3그룹에서는 ‘규모·업종에 따라 불명확한 법규정 구체화’ 항목이 64명(2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처벌 중심이 아닌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 항목이 54명(18%)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앞에서 분석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에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부과’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나, 개선방안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 항목은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안전관련업무 실무자들로서 본인들이 이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처벌대상이 아니고 또한 안전업무 실무자들로서 이보다 더 시급한 개선 필요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건설업체 현장 안전관리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원들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을 크게 몇가지로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현행 법규정 중에서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및 저감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더불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개념을 강력한 사후 처벌중심에서 탈피하여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7. Improvements to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Classification	1group	2group	3group	Total
Create a safe working environment by closely identifying problems at the site rather than focusing on punishment	14 (17.3)	3 (3.7)	54 (18)	71 (15.4)
CSO(Chief Safety Officer) appointed and taked on preventive work to minimize on-site safety accidents	8 (9.9)	6 (7.4)	44 (14.7)	58 (12.6)
Relax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for management executives	10 (12.3)	14 (17.3)	31 (10.4)	55 (11.9)
Embody of laws regulations that are unclear by size and industry	12 (14.8)	14 (17.3)	64 (21.4)	90 (19.5)
Need government policy support measures to improve effectiveness	20 (24.7)	18 (22.2)	42 (14)	80 (17.4)
Presentation of clear standards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and responsibilities	11 (13.6)	19 (23.5)	48 (16.1)	78 (16.9)
Necessary to put in place a reasonable punishment clause suitable for a negligent offender	6 (7.4)	7 (8.6)	16 (5.4)	29 (6.3)
Total	81 (100)	81 (100)	299 (100)	461 (100)

6. 결론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 건설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건설회사 안전관련업무 실무자들은 안전사고가 어느 일부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안전관련업무 실무자들은 안전사고 다양한 발생원인과는 달리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방안 중 중요한 것은 젊고 유능한 국내 기능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수준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 3) 대부분의 안전관련업무 실무자들은 안전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음을 알았다.
- 4)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문제점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법조항, 건설업체 최고경영자에게 형사처벌 등 과도한 책임 부과, 사후 처벌중심의 규정임을 알았다.
- 5)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은 현행 법규정 중에서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회사를 시공능력순위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및 본사 안전담당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필요성 및 문제점, 이에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개정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는 수행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요약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 건설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안전관련업무 실무자들은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방안 중 중요한 것은 젊고 유능한 국내 기능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수준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은 현행 법규정 중에서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다.


키워드 : 안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Funding

Not applicable.

ORCID

Dae-Hyeong Lee,  <http://orcid.org/0000-0002-4995-6527>

Jun-Yong Lee,  <http://orcid.org/0000-0002-0601-4230>

Chang-Baek Son,  <http://orcid.org/0000-0002-9955-2475>

References

1. Cho J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nstruction site safety manager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master's thesis]. [Seoul (Korea)]: Hanyang University; 2022. p.1-2
2. Kim BS. The role of owner and designer for effective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master's thesis]. [Seoul (Korea)]: Chung-Ang University; 2003. p.1-2
3. Shin WS. Enforcement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an analysis of construction safety network based on S.N.A. *Building Construction*. 2021 Jun;21(2):10-9.
4. Hong SH. The development of a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model using the concept of design for safety [dissertation]. [Seoul (Korea)]: Chung-Ang University; 2004. p.1-5
5. Kang 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accident punishment system : Focusing on death accidents in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aster's thesis]. [Seoul (Korea)]: Korea University; 2017. p.1-2
6. Kim HK. Corporate manslaughter in korea: Drawing some legal lessons from the uk's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 Apr;8(4):893-902.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4.081>
7. Kim YK. Legal issues and legal policy task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of enterprises.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2021 Feb;18(1):111-47. <https://doi.org/10.31536/jols.2021.18.1.005>
8. Chae CG.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rough analysis of major accident cases and judicial precedents in south korea : Focused on the core standard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ster's thesis]. [Seoul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21. p.1-6
9. Kim MJ. A study on legislative process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Focusing on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aster's thesis]. [Seoul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2. p.4-29
10. Reliabl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ternet]. Sejong (Korea):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